㉾140-721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-75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****/전송(02)790-8911
보험국장 김기성(6574)/ 보험급여팀장 김선우(6576)/ 대리 고영옥(6573)/ E-mail: kma2010@daum.net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8919호

시행일자 2017. 1. 12.

수 신 각 시도의사회장, 각 학회장, 각과 개원의협의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

참 조

제 목 종합병원 청구처 지원이관 등 관련 청구방법 개정고시 안내

1. 관련 근거
- 건강보험심사평가원, 청구관리부-7호(2017. 1. 6)
- 대한의사협회, 대의협 제813-1528호(2017. 1. 2)
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280호(2016. 12. 30)

2. 위 호 관련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280호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와 관련하여 청구방법 개정고시 내용을 안내하여 온 바, 이를 전달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. 아울러, 동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(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/심사정보/급여기준/각종급여기준정보/청구방법)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[관련내용]
○ 종합병원 청구처 지원이관
○ 임신부 외래진료 본인부담경감
○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 본인부담경감
○ 차상위 환자 고위험 임신부 본인부담경감

(대의협 제813-8919호) 시행일자 2017. 1. 12

붙임: 1. 주요개정내용,
2. 보건복지부 고시문(제2016-280호),
3. 세부작성요령. 끝.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
"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"